

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고인	상호 또는 법인명		
	성명(대표자)		등록번호
	전자우편		전화번호
	소재지		
	분야		
	종합업: [] 종합 전문업: [] 산림경영 [] 산림생태·공학 [] 산림휴양 [] 녹지조경		
감면신청			
[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[]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		

신고내용	변경일자	변경 전	변경 후

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 금액
수탁기관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 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4. 장애인증명서(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	→	접수	→	검토·확인	→	기안·결재	→	통보 및 정보체계 등재
신고인		처리기관 (수탁기관)		처리기관 (수탁기관)		처리기관 (수탁기관)		처리기관 (수탁기관)